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 自動車登録規則[別紙第14号書式] <改正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自動車365(www.car365.go.kr)でも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전등록 신청서 移転登録申請書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裏面の注意事項を参考してください。なお、色で塗りつぶされた欄は、申請人の記入は不要です。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には該当するところにV印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앞쪽)
(前頁)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 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구 소유자 旧所有者 (양도인) (譲渡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사용 본거지(차고지) 使用本拠地(車庫地)			
신 소유자 新所有者 (양수인) (譲受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사용 본거지(차고지) 使用本拠地(車庫地)			
	전자우편 電子メール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携帯)電話番号(リコールの通知の際、文字 メッセージを送信)		
자동차등록번호 自動車登録番号	주행거리 走行距離	km	신자동차등록번호 新自動車登録番号	
등록원인 登録原因	[]매매 []売買	[]증여 []贈与	[]촉탁 []嘱託	[]상속 []相続
	[]기타 []その他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12条第1項、「自動車登録令」第26条第1項及び「自動車登録規則」第33条第1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申請人 氏名 (署名または捺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場・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場・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裏面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者が直接提出してください。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申請人(代表者) (署名または捺印)

<p>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申請人 (代表者) が提出す る書類</p>	<p>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自動車譲渡証明書 (売買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1部</p> <p>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p> <p>譲渡人の印鑑証明書、「本人署名事実確認等に関する法律」第2条第3号の規定による本人署名事実確認書、または同法第7条第5項の規定による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書[売買による移転登録の場合のみ添付し、印鑑証明書の場合、「印鑑証明法施行令」第13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き、印鑑証明書の使用用途欄に自動車販売用であることと、譲受人の氏名・住所(「自動車管理法」第53条の規定により登録した自動車売買業者は事業場所在地)・住民登録番号(法人は法人名・住所・法人登録番号)が記載・発行されたもの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また、本人署名事実確認書または電子本人署名確認書の発行書の場合には、それぞれ不動産関連以外の用途欄または用途欄に、自動車売渡用であることと、譲受人の氏名・住所(「自動車管理法」第53条の規定により登録された自動車売買業者は事業場所在地)・住民登録番号(法人は法人名・住所・法人登録番号)が記載されたもの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ただし、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譲渡人がこれ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せん。</p> <p>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イ. 「自動車管理法」第53条の規定により登録された自動車売買業者が売渡または斡旋した場合</p> <p>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ロ. 「自動車管理法」第60条の規定による自動車オークションの開設者がオークションを実施した場合であって、オークション取引を証明する書類(自動車登録番号、譲受人、落札金額、オークション開催日などが含まれます。)の原本を提出した場合、</p> <p>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ハ. 譲渡者と譲受者が直接取引した場合であって、譲渡人が直接登録官庁で自動車の譲渡の事実を確認した場合</p> <p>1.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贈与証書 (贈与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1部</p> <p>2.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売却決定書 (「自動車管理法」第26条第3項に基づいて売却した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1部</p> <p>3.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確定判決謄本 (判決による所有権移転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1部</p> <p>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には、委任状と委任され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は法人印鑑証明書を提出し、当該法人が提出した使用印鑑を登録官庁が対照・確認できる場合には、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各1部</p>	<p>수수료 手数料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1,000ウォン ただし、使用 本拠地以外の 市・道で申請 する場合には 1,500ウォン です。</p>
--	---	--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p>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確認する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家族関係記録事項に関する証明書(相続の場合にのみ該当し、公証証書など継承の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所有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は、住民登録票抄本、運転免許証また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住民登録証のコピーまたは運転免許証のコピーやその他使用本拠地を確認でき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非事業用自動車を登録する法人等の場合には、事業者登録証又は法人登記事項証明書(事業者登録証のコピーやその他使用本拠地を確認でき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4. 자동차등록원부 自動車登録原簿
---	--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p>「地方税特例制限法」による取得税減免対象</p>	<p>[]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 「障害者福祉法」による障害者で、かつ障害等級1級から3級までに該当する者</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国家有功者で、傷痍等級1級から7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p>[]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に基づいて登録した5・18民主化運動の負傷者で、かつ身体障害等級1級から14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 「枯葉剤後遺疑症などの患者支援およ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による枯葉剤後遺疑症患者で、かつ硬度障害以上の障害等級の判定を受けた人</p>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方税特例制限法」に基づいて取得税減免対象の場合、該当する事項にV印をしてください。

유의사항 注意事項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제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登録された自動車売買業者を介して中古車を売買した場合には、自動車売買業者が移転登録申請を代行します。ただし、譲受人が直接移転登録を申請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12条第2項)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譲受人が移転登録を申請しない場合には、譲渡人が移転登録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自動車管理法」第12条第4項)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譲受人が移転登録期間(売買: 買収日から15日以内、贈与: 贈与を受けた日から20日以内、相続: 継承開始日が属する月の末日から6ヶ月以内、その他: 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以内に移転登録申請をしなかった場合には、関連規定に基づいて罰金が科せら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1条第2号、第85条第1項)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携帯)電話番号は、あなたの自動車管理(リコールなど)に必要な事項を案内・サポート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記入をお願いします。なお、番号を変更された場合には管轄申告官庁にご連絡ください。ただし、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書かなくても構いません。